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46th June 15, 2012

- ▶ COVER STORY:
미국의 증세 논란과 세계개혁 방안
..... 2
- ▶ FTA NEWS: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자율점검 하세요!
..... 3
- ▶ VOICES FROM THE FIELDS:
수출입 허가제도②
..... 4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6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㉞
..... 7
- ▶ WHERE IS GRACE CHANG?:
BUTTERFLY EFFECTS
..... 9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Cover Story

미국의 증세 논란과 세계개혁 방안

미국의 증세논란과 우리의 교훈 - I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1981년 당시 미국 경제는 약화일로에 있었다. 제 2차 석유파동 속에서 인플레이션율은 10%를 넘었다. 레이건은 집권 2년 만에 인플레이션율을 4%이하로 낮추었으며, 개인소득세율을 1986년 까지 28%로 낮췄다. 기업법인세율도 50%대에서 30% 중반으로 낮췄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급속하게 되살아났고, 휘청거리던 미국은 다시 세계의 강국으로 허리를 펴 수가 있게 됐다.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동서냉전도 끝났다. 이를 이끈 레이건은 미국의 제 2부흥기를 이끈 대통령으로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레이건의 정책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감세를 한 만큼 경제가 활성화 되어 세금이 더 걷혀야 재정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감세를 너무 많이 했고, 소련과의 경쟁 때문에 국방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린 덕분에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레이건의 정책은 레이건의 대를 이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다. 그 후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낮아졌던 세율이 약간씩 상승한 것이다. 그렇지만 레이건 이전 시기로 돌아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면, 32%까지 내려갔던 기업법인세가 35%로 올라간 정도였다. 또한 클린턴은 거의 제로(0) 금리 정책을 실시했다. 이자율을 낮추어 사람들의 소비를 장려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경기는 계속 활황을 보였다. 경제가 호황을 보임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 클린턴 임기 말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정도였다. 당시까지의 확실이나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발견된 현상은, 증세를 하면 경제가 약화되고 그 반대로 감세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클린턴 시기에는 그런 일반적인 견해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업적 때문에 재임 기간 동안 클린턴도 레이건 못지 않은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백악관에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엄청난 스캔들을 불러 일으키고도 재선에 성공할 정도였다.

버블과 경제호황

그러나 오늘날 돌이켜 보면 클린턴의 화려한 업적 중 상당 부분은 정보기술(IT) 버블과 부동산 버블 때문이었다. IT 버블은 클린턴의 임기가 끝나는 2000년에 터졌고, 저금리 정책 때문에 시작된 부동산 버블은 2007년에 가서야 터졌다. 클린턴은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오래 전 임기를 끝마쳤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비난의 화살에서는

일부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전혀 소득이 없는 실업자도 집값 전액을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그의 정책이 부동산 버블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별로 이견의 여지가 없다. 즉 클린턴 재임 시절 버블이 커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을 보였던 것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다.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은 후,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바 있다. 그 결과 경제에 거품이 생기면서 위기를 쉽게 극복하는 것 같았지만, 2002년 경부터 카드 빚으로 소비를 늘렸던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파산하면서 카드사들이 일제히 도산위기에 몰리는 카드대란이 발생하였다. 전체 성인의 15% 수준에 달하는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겼을 정도로 그 피해는 막심했다. 소비가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는 다시 위기에 빠졌다. 결국 경제위기에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회복된 것은 2005년에 이르러서였다. 미국 발 부동산 거품으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보여서, 그 결과 해외 수출이 늘어나서였다.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 발 부동산 거품으로 한국의 경제위기가 극복된 셈이다. 그러다 미국 발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한국 경제도 다시 어려워 졌다.

증세논란과 그 배경

이처럼 경제정책의 효과를 정책 발효 즉시 판단하기는 어렵다. 증세나 감세의 효과도 마찬가지다.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다른 정책들이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그것이 세금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미국에서는 증세 논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증세를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나 조사결과를 이용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논란이 생긴 이유는 재정적자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과거 부시 대통령이 이끈 공화당 정권의 잘못된 감세정책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났다는 주장을 종종 해왔다. 이때의 적자규모는 매년 1,000억 ~ 3,000억 달러 규모였다.

그런데 이런 적자 규모가 갑자기 2008년 5,000억, 2009년 1조 4천억, 2010년 1조 3천억, 2011년 1조 5천억 달러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금융계에 대한 자금지원 (양적완화 정책이라고

불림)과 의료보험이나 기타 여러 복지정책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급속히 늘렸고, 그 반대로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어 세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¹ 즉 예산을 집행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어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은 빚 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파산상태나 다름없는 그리스나 제 2의 그리스가 될 것이라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보다 미국이 사실 더 어렵다. 그 결과 전체 국가 빚 규모가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고 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이러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 전망으로 강등될 만하다. 국가간 거래에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이점만 없었다면 벌써 투기등급일 것이며, 아무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앞으로의 미국 상황 전망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증세를, 공화당은 정부지출 축소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붙고 있다. 사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둘을 다 함께 실시해도 재정의 수지균형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 뿌려도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달러 찍어내기를 멈추고 세금을 올린다면 경기가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2011년 말부터 경기가 아주 미미하지만 하락을 멈추고 완만히 회복 중이라는 뉴스가 간간히 들리고 있지만, 정부가 이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점을 봐야 한다. 만약 정부가 돈을 뿌리는 일을 멈춘다면 이런 완만한 회복세가 단번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증세는 쉽지 않을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세율을 20%씩이나 급격히 낮출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미국의 법인세 35%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쟁자인 프랑스나 독일이 30% 초반이며, 홍콩이나 싱가포르 10% 대다. 개인 소득세는 제일 높지는 않지만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높은 나라들은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몇몇 나라들뿐이다. 국가들 사이의 경제전쟁이 가속화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기업과 고소득자를 자국에 유치하고자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올리면 된다고 일부에서는

이야기 하지만, 그 정도 올려서는 세수가 아주 조금 늘어나는 정도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부분 워런 버핏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대로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한다면, 연간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가 3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² 2011년 재정적자 규모 1조 5천억 달러와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증세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계층의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심각한 경제불황 상황에서 세율을 더 올린다면 기업이나 개인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미국인들이 캐나다로 국적 바꾸는 것은 아주 쉽다. 캐나다인이 되면 비슷한 세금을

내면서 복지혜택은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세금을 올려도 겨우 수 퍼센티지 올릴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올린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어차피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캐나다나 유럽에 위치한 자회사나 사업부로 본사의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각국에서는 과거 증세를 하자 많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나 스위스 등지로 본사를 옮긴 사례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만약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규모로 동시에 세금을 올린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 국가만 세금을 올린다면 그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이러니 미국이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 중 학
(acchoi@snu.ac.kr)

¹ 재정적자가 왜 중요한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의 예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일반 가정이라면, 장기간 동안 평균해서 볼 때 가정의 수입과 지출이 거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만약 가정의 수입보다 지출이 상당히 많다면, 빚이 계속 늘어나다가 언젠가 그 가정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

² 워런 버핏이 이 증세안의 도입을 적극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버핏세'라고 부른다.

FTA News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자율 점검하세요!

FTA 협정의 이행 및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위해 2010년 기존의 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뉘었으며, 지금까지 약 3,557개의 업체¹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다. 지난 해 FTA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각각 3년,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세관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인증 당시에만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체가 실제 다수 존재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개요

분야	내용
사후관리 담당세관	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세관
점검대상	업체별 · 품목별 인증수출자
적용대상 인증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서 다수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 최초 인증건 적용
자율점검표의 작성 · 제출 ^(*)	인증수출자 자율관리점검 결과보고서 1부, 자율관리 점검표 1부 ⇒ 작성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제출
점검결과 통지	정기자율점검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 회신

^(*) 세관장은 인증수출자 자율관리점검 결과보고서 및 자율관리 점검표를 검토한 후 서류 보완요구 및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함

□ 자율점검 사항

1. 수출입 통관(일반사항)

전체 수출입 품목 수(HS 6단위 기준), 수출물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품목이 수입되었는지 여부, FTA 체결국 중 수출입 실적에 있는 국가, 인증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품목을 점검함

2. 인증사항 변경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받은 품목의 수, 인증요건 변경사항의 인증세관 신고 여부, 인증 후 추가 원산지지위 획득한 품목 여부, 인증품목 중 원재료 변경 품목 및 원재료

변경으로 원산지지위 변경 품목, 인증 후 HS 6단위 변경 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PSR) 변경 품목 여부를 점검함

3. 원산지관리전담자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인원수 및 고용변동 여부, 외부 전문가에 위임시 계약기간 경과 여부, 전담자의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함

4. 원산지 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성 및 관리 여부, 자필서명 여부 및 서명카드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5. 원산지 기준 관리

품목분류(원재료 및 수출품)의 정확성 여부, 중간재 지정시 수출자의 직접 생산여부 및 중간재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함

6. 원산지 증명서 관리

각 협정별 서식 및 절차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재발급, 수정통보 여부, 기관발급 신청시 반려실적 및 사유 등을 점검함

7.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품목의 원산지소명서 작성여부, 송품장상의 품명규격 동일성 여부, 제품의 품목번호 결정방법, 물품가격(FOB 또는 EXW) 적정성, 투입 원재료, 작성자의 서명 및 직인명판 날인여부를 점검함

8. 원산지 (포괄) 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건수, 확인서 및 소명서의 공급자 일치 여부, 포괄확인기간 경과여부,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지원여부, 작성자의 서명 및 직인명판 날인여부를 점검함

9. 제조 공정

제조공정도 구비여부, 해외 생산공정 존재여부, 불인정공정 수행여부, 외주 공정시 추가 원재료 투입여부, 공정도의 작성일자 및 작성자 기재 여부를 점검함

10. 원재료 관리

원산지별 재고관리 여부, 업체에서 적용하는 원재료 재고관리기법, 완성품과 원재료의 HS 4 단위 동일 여부를 점검함

11. 원가 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협정별 상품가격 산출방법(FOB 또는 EXW) 적용여부, 원가배분방식에 의한 원가계산서 작성여부, 원재료 및 물품가격의 가감요소 적정성 여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과다 책정 여부를 점검함

12. 서류 보관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여부, 원재료 명세서의 작성 및 관리여부, 보관 중인 증빙자료에 의한 원산지 판정여부를 점검함

□ 자율점검의 유비무환

상기 자율점검 사항은 간단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답변할 수 있으나, 세관장의 서류 보완 및 현장점검 요구를 받게 된다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비협조 기업에 대하여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거나 시정명령 및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자율점검은 인증수출자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인증요건 유지에 대한 수출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인증수출자는 기업비밀 보호는 물론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인증을 위한 인증업무에 그치지 않고 인증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¹ 2011년 10월 기준, 관세청 보도자료

Voices From The Fields

수출입 허가 제도②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외무역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주요제도로는 대외무역경영자의 자격관리제도,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관리제도, 국제서비스무역관리제도, 변경무역관리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의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실시하고 있는데 수출입허가제도는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 수출쿼터 또는 허가증관리 상품

중국에서 수출쿼터와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은 상무부가《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 쿼터 또는 허가증관리 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관총서 등 관련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공포하는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이다. 국가에서 쿼터를 실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수출허가증이 있어야 수출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품이 포함된다.

- 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물자성 수출상품, 중국의 수출에 있어서 점유율이 높은 전통 수출상품, 국제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주요상품
- ② 수출액이 크고 경영 질서가 쉽게 문란해 질 수 있는 상품과 중요하고 특수한 요구에 의한 수출상품.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수출허가증을 면제할 수 있다.
- ㉠ 구상무역 수출로 국가규정에 의해 쿼터를 실시하는 상품 이외의 기타 수출허가서 관리상품
- ㉡ 위탁가공무역(來料加工), 위탁조립가공(來件裝配)후 재수출하는 물품
- ㉢ 중국에서 주최하는 각종 수출전람회 출품하는 상품으로써 판매하지 않고 전시 후 전부 재수입할 물품
- ㉣ 경제기술교류활동으로 인하여 대외에 제공하는

건품

㉤ 대외경제기술원조 항목으로 수출되는 각종 물자

□ 방직품 수출쿼터 관리

중국은 중국과 방직품 쌍무협정을 맺은 국가의 방직품에 대해서는 피동쿼터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중국과 방직품 쌍무협정을 맺은 국가로는 미국, EC,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있다. 면, 모, 인조섬유, 기타 식물섬유와 사혼방직품 및 기타 제품 등 상품에 대하여 중국은 수출수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은 상무부 및 그 수권기관에서 발급한《방직품수출허가증》에 근거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 수출입쿼터 또는 허가증 신청 및 통관요구

- (1) 수입허가증 발급기관
수출입허가증의 발급은 상무부에서 담당하며 수출입허가증의 심사와 발급은 급을 나누어 실시하는데 상무부의 쿼터허가증사무국(配額許可證事務局), 각지의 상무부 주재특파원 사무실 및 지방 經貿主管기구 즉,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經貿委(廳, 局) 등이 있다. 수출입허가증의 신청 및 수령은 '國家進出口許可證管理商品分級發證目錄'의 요구에 따라 각급 발급기관에서 처리한다.
- ① 중앙, 국무원 각 部·委 級 및 그 소속기업은

상무부에 신청한다.

- ② 상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각지 주재 특파원 사무실에서는 연해개방도시 및 그 연계지구 내 관련부문의 일부 수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 ③ 상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經貿廳(委·局) 또는 外貿局은 일부 수출화물허가증과 본지 소속 각 부문의 일부 수입화물허가증을 발급한다.
- (2) 수출입허가증의 신청수속
수입 또는 수출허가증 신청은 상무부에서 규정한 요구에 따라《수입허가증신청서》또는《수출허가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신청회사의 명칭, 수출 또는 수입상품의 명칭, 수출 또는 수입 거래가격, 무역방식, 수입국별(지구) 또는 목적국(지구), 가격조건(FOB 또는 CIF)등을 기재한다.
- ① 국가 쿼터제한상품의 수출입허가증 신청 시에는 반드시 허가증 발급기관에 관련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수출입쿼터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내化工생산, 과학연구 수요에 따라 화학무기생산에 사용되는 화공원료의 수입은 반드시 지정된 기업으로 하여금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化工廳(局) 또는 관련 部·委에 신청서와 제품의 최종 용도설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동의를 구한 다음 部의 기준을 얻어야지만 상무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발급한다.

③ 일반무역과 가공무역방식으로 'CD(光盤)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國家新聞出版署에 신청하고 新聞出版署의 비준문서와 전기전자제품수출입관리부문이 발급한《기전제품 수입등기표(機電產品進口登記表)》를 가지고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에 수입허가증 신청을 한다. 해관은 수입허가증을 근거로 검사·면허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수입하는 CD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기업이 新聞出版署가 발급하는《음향제품복제경영허가증(音像製品複製經營許可證)》, 상무부의 비준 증명서와 상무부가 비준한 수입설비 명세서를 가지고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에 수입허가증 신청을 하고, 해관은 수입허가증을 근거로 검사하고 면허한다.

④ 중국이 피동쿼터관리를 실시하는 紡織品 수출에 대해서는 상무부 및 그 수권을 받은 기관에《방직품 수출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만약 수출 방직품이 국가에서 쿼터를 실시하는 상품에 해당되면 추가로 《수출화물허가증》까지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3) 허가증의 유효기한 및 내용과 변경
 수입쿼터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이다.

'一批一證'제를 시행하는 수출허가증관리상품은 그 허가증 유효기간이 발급일자로부터 최장 3개월로 유효기간 내에서만 한차례 통관신고를 할 수 있다. '一批一證'제를 시행하지 않는 외상투자기업과 보상무역의 수출상품 허가증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최장 6개월이며 여러 번에 걸쳐 통관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최다 12번을 초과할 수 없다.

홍콩·마카오에 공급되는 신선농수산품의 허가증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수출입화물은 유효기간 내에 수출입하여야 하나 만약 유효기간 내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출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 발급기관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 발급된 허가증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원 발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허가증관리 상품의 통관요구
 국가에서 쿼터 또는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의 수출입통관 시 반드시 해관에 《수입화물허가증》또는《수출화물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수출입 통관수속을 할 수 없다.

중국에서 피동쿼터관리를 실시하는 방직품에 대해서는 해관은《방직품수출허가증》에 근거하여

면허한다. 쿼터를 실시하는 17종 상품 중 하나인 방직품에 속할 경우 해관은 《방직품수출허가증》이외에 《수출화물허가증》을 추가로 징구하여 이를 근거로 검사, 면허한다.

수출입허가증 관리상품이 만약 상품검사, 무선전파관리, 동식물검역 등 국가에서 기타 수출입관리를 실시하는 대상에 속할 경우, 수출입통관 시 수권 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타 수출입증명서도 함께 해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

국가는 일부 특정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쿼터 또는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분류관리 목록에 들어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총공사(總公司)가 대외경영을 맡거나, 총공사(總公司)와 동상품의 경영권이 있는 분공사(分公司)가 연합하여 대외거래를 한다.

□ 수입상품의 분류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첫째, 일괄대행구매방식에 의한 수입상품이다. 즉,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중적이고 민감하며 중요한 수입상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밀, 원유, 제조유, 화학비료, 고무, 철강재, 석유,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면화, 연초 및 그 제품, 설탕, 식용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품은 지정된 외무수출입총공사(外貿進出口總公司) 또는 이러한 총공사가 외국과 홍콩·마카오지역에 설립한 업무기구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해외주문을 대행한다. 수입허가증관리대상에 속하는 상품은 허가증을 받아야한다.

둘째, 연합하여 대외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입상품이다. 즉, 국제시장 공급이 상대적으로 국내외가격차가 큰 수입상품은 상무부의 비준을 받은 동상품의 수입경영권을 지닌 외무기업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진다.

셋째, 경영이 개방된 수입상품이다. 즉, 상술한 첫째·둘째 종류의 상품 이외의 기타 수입상품은 각 지방·부문의 수입경영권이 있는 공사·기업이 경영한다. 다만, 국가에서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은 여전히 허가증을 받아야한다.

□ 수출상품의 분류

수출상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첫째,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연관되고 자원성이며 국제시장에서 독점적인 특수한

수출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쌀·대두·옥수수·차·석탄·팅스텐·안티몬·원유·제품유·목화·면사·면테릴렌사·면천·면테릴렌천·잠사류·비단 등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지정된 하나 또는 여러개의 외무·공무수출입총공사로 일원화하여 경영(관리)하거나 외무수출입총공사와 지방외무수출입공사가 연합하여 경영하고 계약한다.

둘째, 국제시장에서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쿼터제한이 있으며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가격이 민감한 수출상품이다. 이러한 종류의 상품은 경영권이 있는 각종 외무기업이 경영한다. 셋째, 첫째와 둘째 상품을 제외한 기타 수출상품으로, 이는 수출경영권이 있는 각종 외무기업이 경영한다.

□ 대외무역국별 정책

대외무역국별 정책이란 국가외교정책의 수요에 따라 대외무역활동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국가(지구)에 대하여 서로 다른 무역방침·정책과 방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대외무역국별 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① 대외무역방면에서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근거하여 기타 체결상대국·참가상대국에 최혜국대우*와 국민대우를 주거나 또는 호혜·평등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국민대우를 해준다. 즉, 중국이 기타 국가(지구)에 최혜국대우·국민대우를 해주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중국과 무역조약·협정을 체결하거나 국제조약·협정에 공동으로 참가한 국가(지구)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국가에 최혜국대우·국민대우를 해주는 경우이고, 둘째는 중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구)에 대하여 호혜 또는 평등원칙에 따라 상대방국가에 최혜국대우와 국민대우를 해주는 경우이다.

② 무역방면에 있어서 어떤 국가(지구)가 중국에 대하여 차별대우성의 금지·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중국 또한 실제 상황에 따라 동 국가(지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사무관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

*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제 3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1. 개정이유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마련, 자체 제도 개선하여 시행 중인 내용 반영

2. 개정내용

1) 보정(심사)제도 개정

세액보정은 부족 신고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신청가능, 보정한 세액도 사후심사 가능

2) 보정심사의 확장

△ 수리 후 6 개월 경과

- [현행]본부세관 기획심사부서

- [개선]통관지 세관에서 수정안내 또는 경정처리

△ 타세관 정보제공

- [현행]타세관 정보제공절차 없음

- [개선]타세관에 정보제공하고 조치결과는 회보 받음

3) 관세조사의 정의 및 절차 등 개정

종전 서면조사 개념 삭제. 방문 및 서면에 의한 관세조사의 대상 등 명확화

4) 과세전통지건에 대한 조기경정 신청방법 구체화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통지내용대로 조기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3. 감액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신청 절차 일원화 등

1) 감액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이 가능토록 함

2) 과오납환급신청시 통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감액경정통지서)의 제출 생략 및 환급신청권 양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4. 시행시기

2012년 6월 1일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특허대상확대 · 특허심사강화 · 업체별 차등관리

2. 개정내용

1) 특허대상의 보세작업 범위에 성능검사 포함 IT 제품의 정밀화·고도화 등으로 TEST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검사 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

2) 자율관리능력 확보를 위한 관리요건 보강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 시스템화, 특허갱신시 법규수행능력 반영으로 기업 자율관리능력 보완

3)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평일야간 사용 후 익일 사용신고 허용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시 보세운송절차 생략, 동일법인간 보세운송절차 생략

4)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확대 및 선적기간 연장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으로 반출시 보세운송 특례절차 마련

-보세가공물품 수출적재 연장기간을 3 월에서 6 월로 확대

5) 기타 사항

-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명시하여 민원편의 제공

-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을 타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시 반출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보세공장 보수작업 범위에서 성능검사 제외

3. 시행시기

2012년 6월 1일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주요 개정사항

1. 개정이유

관세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2. 개정내용

1) 인천공항본부세관 관할 기업의 심사세관 지정

기업심사관한이 없는 인천공항본부세관 관할 기업의 심사세관을 인천본부세관으로 지정하여 심사업무의 공백 방지

2) 관세조사 시 통합심사 예외사유 명확화 세금탈루 등 특정사안만 심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심사 분야별 개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3) 심사기간 연장, 심사중지 및 재개 사유 구체화 심사중지 시 심사기간의 연장과 심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심사중지가 가능토록 하고, 중지사유 소멸 전에도 심사재개 근거를 마련함

4)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 제외기준 구체화

-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①기업신고성실도

②장기미심사

③무작위추출

- 법인심사대상 선정 제외기준을 구체화

5)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 심사세관에서 과태료 부과

지정된 과태료부과 세관(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뢰하던 절차를 해당 사안을 적발한 심사세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일치시킴

3. 시행시기

2012년 6월 1일

신한관세법인

관세사이선경

sklee@customsservice.co.kr

특정 금액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

(HQ 547108 2000.03.28)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테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테디의 조언자인 정정식 관세사에게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인 사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 거래사실(Facts)

1. 캐나다의 E(수출자)의 자회사 I(수입자)는 E 로 부터 남성의류(이하 "제품")를 수입하여 미국 내 판매함.

2. I 는 수입신고서 상의 수입자이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3. E 는 I 에 대하여 3 가지 타입의 송장을 발행함. 미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 I 는 CMT 와 MPR 의 총 금액과 WEA 의 일부가 포함된 금액을 신고함. 3 가지의 송장이란 다음과 같음.

가. CMT 송장: 자르기(Cut), 만들기(Make), 다듬기(Trim)

이 송장은 의류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생산비용을 나타냄. 이는 직, 간접적인 인건비임.

나. MPR 송장: 재료 구입 비용(Material Purchase Recovery)

E 는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원단을 구매함. 이 원단은 I 에게 판매되며 따라서 생산과정의 이전에 I 가 원단의 소유자가 됨. 이 송장은 I 에 대한 원단의 판매 금액임

다. WEA 송장: 보관 및 일반 비용의 배분(Warehousing and Expense Allocation)

이 송장은 보관 및 일반적인 경영상의 비용임.

WEA 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됨.

(1) 보관비(Warehousing)

생산에 사용될 원단의 보관 비용 및 생산 전 미국으로의 선적 대기 시 보관 비용

(2) 경영자 인건비(Management Salaries)

몬트리올에 있는 E 의 관리자에 대한 봉급

(3) 입력 직원 인건비(Data Entry Salaries)

몬트리올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비용과 관련된 자료 투입 비용

(4)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Office Salaries and Supplies)

E 의 직원 고용 및 지원 비용

(5) 컴퓨터 공급 비(Computer Supplies)

몬트리올에서의 컴퓨터와 그 공급 비용

(6) 전화비(Telephone)

몬트리올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하는 전화비용

(7) 구매 직원 급여(Buying Salaries)

E 의 직원들이 원단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봉급

(8) 트럭 대여비(Shipping Truck Rental)

제품을 I 창고로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9) 선적 소요 인건비(Shipping Salaries)

물품을 싣기 위한 선적, 포장 등 작업에 소요되는 보수

(10) 판매 비(Selling Expenses)

소비자들의 주문 전화에 대한 수신자 부담 전화 비용

(11) 기타 판매비(Traveling and Selling Expenses)

몬트리올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을 방문하거나 다른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이동 비용

4. I 는 CMT 와 MPR 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나타낸다고 하며 WEA 송장은 물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고, 따라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쟁점(Issue)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WEA 중

어떠한 항목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임. (미국 관세법 19 U.S.C 1401(a))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으로, 직·간접여부를 불문하나, 운송, 보험, 선적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외.

따라서 우선은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임.

2. 관련 판례 및 예규

가. Generra Sportswear Co. 판례 (1990)

수입자가 수출자에 지급한 모든 비용들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될 수 있음. "total payment"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제품의 본래 가격에 더하여 다른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음. 거래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입증은 수입자가 하여야 함.

나. Moss Mfg 판례 (1990)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 수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따진다면, 이는 엄청난 양의 일이 될 것이므로, 거래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입증은 수입자가 하되, 일단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들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다. Chrysler Corporation 판례 (1993)

- 국제무역법원(CIT)은 거래와 독립적이거나 수입 제품과 관련 없는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 비용의 지급은 수입량 등에 따라 배분되어 이루어 질 수 있음. 이 사건에서는 수입되는 엔진(수입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소요된 기계 비용을 배분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 (예: 생산지원비용을 수입량에 대해 배분하는 경우)

라. HRL 544758 (1992. 02. 21)

수입자가 특수 관계가 아닌 수출자에게 참고료를 지불한 경우, 이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었음.

마. HRL 545663 (1995. 07. 14)

제품의 제조 전, 제조자와 특수 관계인 참고 소유자에게 지불한 참고료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였음.

3. 쟁점 검토

- WEA 송장에 포함된 금액 중 트럭 대여비, 판매비, 기타 판매비(FACTS 3. 다 (8),(10),(11) 항목)는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은 쟁점 검토 되지 않음.

- 쟁점 사안에서 WEA 송장에 대해 I 가 E 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송장 상의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수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면 실제지급 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

- 보관비, 선적 소요 인건비,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 구매 직원 급여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움

(1) 선적 소요 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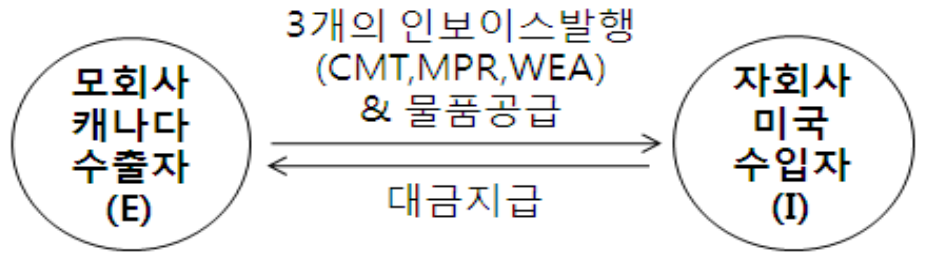
선적 비용은 포장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포장 비용이란 어떤 물건이든 선적에 적합하도록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는 비용임.

관세법 19 U.S.C 1401(a)에 따르면 포장비용이 이미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가산 금액에 포함한다고 함.

관세청은 수입자가 금액의 배분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전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만 하나, 이 사안에서는 선적 보수의 50%를 선적 하는 데에 배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만큼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함.

(2) 보관비

보관비와 관련하여, 물품 생산 전 보관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봄



쟁점 사안에서 제조 전 원단의 보관과 선적 전 제품의 보관은 제품의 수입과 관련됨. 그리고 이 비용은 수입자에 의해 수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총 참고 보관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3)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 등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용,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 구매직원 급여는 수입제품과 관련됨. I 측의 관리자 및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에는 E 가 아닌 I 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나타냄.

(가) 경영자 급여

5 명의 관리자는 몬트리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모회사의 전략기획을 맡았음. 이들은 의류의 새로운 디자인, 소비자 요구 충족, 원단 품질 향상, 고객에 적기 배송 등에 대하여 회의하였음. 이들의 봉급은 미국에서의 판매량에 기초하였음. 회계 관리를 하기도 하고, 캐나다에 2,500 명이 넘는 직원의 관리를 위해 예산 집행을 하기도 함

(나)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 등

몬트리올에서의 컴퓨터 비용 및 컴퓨터 관련 자료 입력 인건비, E 회사 직원의 봉급과 각종 지원 비용,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에 대하여 I 는 96%이상이 미국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I 와 관련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 역시 판매 지원 시설이므로 배분 비율을 따져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마땅함.

(다) 구매직원 급여

I 는 원단의 구매 활동이 원단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그러나 원단은 E 가 구매한 후 I 에 재판매 되며,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용이하기 위한 것임. 이 역시 배분 비율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 배분 비율은 E 의 생산 관련 비용과 I 의 판매 관련 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함.

쟁점 사안에서 E 가 인력, 시설,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E 와 I 의 비용 부담을 9.2 : 1 로 결정함. 즉, 92.2%의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와 구매 직원 급여는 수입되는 옷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

- 본래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없으나, 단지 특수 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활용 가능함.

- 본 사안의 경우 CMT, MPR, WEA 이 세가지 송장 금액이 모두 감안된 가격은, 이익 금액에 기타 모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마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 처럼 거래하였음.

일반적인 상거래 상 가격 결정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음.

□ 결정(Holding)

1. 제시된 증거들을 토대로, 특수관계자인 두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은 3 개의 송장(CMT 전체 금액, MPR 전체 금액 및 WEA 금액 중 일부)에 의해 나타낼 수 있음.

2. E 와 I 의 특수관계가 거래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기초로 평가가 가능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Butterfly Effects



장승희
대표 관세사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104 년만의 가뭄이라 합니다. 길가의 풀들이, 갈아엎은 밭에 심은 농작물이, 심지어는 말라붙은 개천에 개구리 알이 죽어가고 있다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날린 나비가 이 땅에 가뭄을 일으켰을까요?

세계경제위기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타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고 내수가 줄고. 이로 인한 제조가 줄고 그에 따른 서비스업도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나비 때문인가요?

Cover Story 로 서울대 최종학교수의 ‘미국의 증세논란과 세제개혁방안 I’를 보내드리는 것도 나비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인지 누가 날린 나비 때문인지? 대책을 세우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가 6 월 25 일 타결되었습니다. 이후 법률검토, 국회비준등의 절차를 거치어 연내에는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4,314 명을 보내었던 나라입니다. 6•25 로 맺어진 혈맹관계가 경제동맹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60 여 년 전 날린 좋은 나비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나비를 날리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작은 말과 행동이 좋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고 있기를 바랍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미국의 증세 논란과
세제개혁 방안



최 중 학 교수
(acchoi@snu.ac.kr)

PROFILE

- 現)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現)홍콩과기대학 교수
- 6 년 연속 최고강의상 수상
- University of Illinois 박사
-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수석졸업
- 저서
- 숫자로 경영하라
-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
- 매일경제선정
- 한국의 경영대가 25 인

FTA News-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자율점검하세요!



최 지 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다수업체 FTA 인증수출자제도
- 컨설팅 다수업체
- FTA 원산지증명서

Voices From The Fields-

수출입허가제도②



임 창 환 세관장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 선 경 관세사
(j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US Rulings 연재⑥

특정금액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